

의안
번호

331

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09. 03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김경이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 : 제331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08. 14.

라. 회부일자 : 2024. 08. 28.

2. 제안이유

-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나. 폐의약품 처리 관련 사업의 추진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다.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과 표창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4. 08. 20. ~ 2024. 08. 26.
 - 의 견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제정안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,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제정안은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.
- ‘폐의약품’은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¹⁾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자목²⁾ ‘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’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며,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의4제1항³⁾에 의하면, 구청장 등은 관할구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- 따라서,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, 본 조례안은 법제적으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 됨.

1)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2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(이하 “생활계 유해폐기물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4. 30.>

1. 폐농약
2. 폐의약품
3.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

2. 주민의 복지증진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3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의4(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(이하 “생활계 유해폐기물”이라 한다)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
2.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
3.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(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)

- 현재 폐의약품의 2023년 연간 수거량은 5,519kg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가정 등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불용 및 폐의약품의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.

< 2023년 폐의약품 수거 실적>

(단위: kg)

성북구	소 계	수거합	약 국	우체통
1월	468	468	-	-
2월	230	230	-	-
3월	652	652	-	-
4월	333	333	-	-
5월	438	438	-	-
6월	345	345	-	-
7월	662	647	-	15
8월	585	560	-	25
9월	75	43	-	32
10월	774	749	-	25
11월	594	570	-	24
12월	365	348	-	17
총 계	5,519	5,381	-	138

□ 주요내용

-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“폐의약품”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 홍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폐의약품 발생 최소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.

- 안 제5조는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보건소,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하였으며,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규정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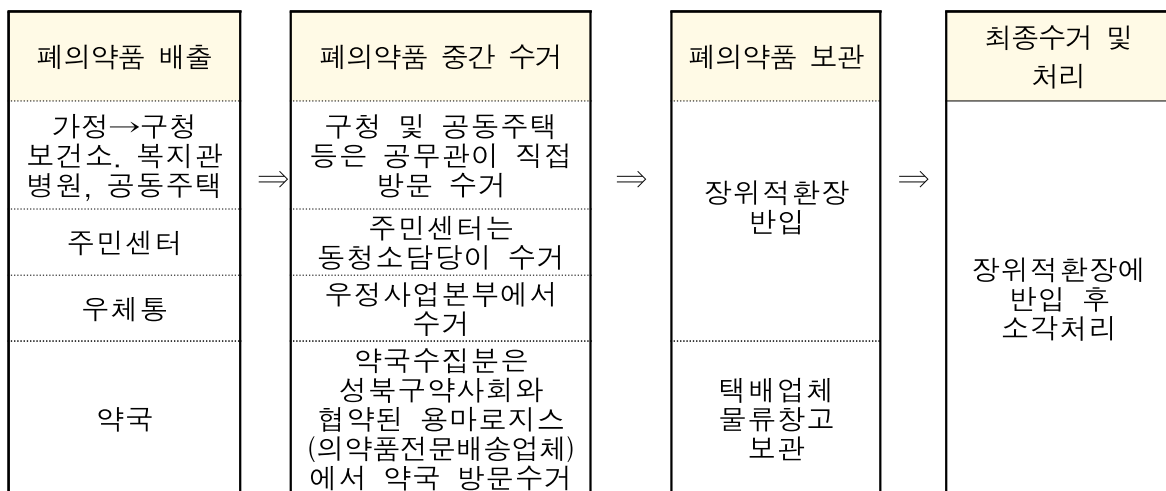
< 관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현황(2024년 현재기준) >

합계	업종							
	약국	구청	주민센터	보건소	복지관	공동주택	의원급의료기관	기타
39	0	1	20	4	2	10	2	0

※ 약국은 폐의약품 수거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, 자체적으로 수거 가능

※ 관내 우체통(41개)으로도 폐의약품 수거 가능

<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방법 체계도 >



※ 폐의약품 수거주기

정기: 매월 1회 수거(마지막 목요일)

비정기: 배출량 초과 발생으로 필요시

※ 폐기물처리 대행(소각)업체에서 폐의약품 별도 소각처리(매월 1회)

- 안 제6조와 제7조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폐의약품 관리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가정 등에서 사용기간 경과 및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본 조례로 명문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,
- 폐의약품은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,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, 올바른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.